



수험소식 및 수험자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대폭 개선

- 신체검사 기준·절차 합리화로 응시자 권리 보호 강화 -

I. 개요

- ◇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 신체검사 절차 개선: (현행)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 판정
→ (개정) 불합격 판정 전에 관련 질환의 전문의가 추가 검사 실시

1. 1963년 제정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된다.

- (1) 발병률이 미미하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며,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 삭제된다.
- (2)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2. 먼저,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은 현재 14계통 53개 항목에서 13계통 22개 항목으로 개선한다.

- (1)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발병률이 매우 미미한 질환이 삭제된다.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도 기준에서 제외된다.
- (3) 또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이나 치아계통의 질환 등도 기준에서 삭제한다.
- (4) 일부 기준은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 예 시 〉

- 중증인 고혈압증(확장기혈압 115mmHg 이상인 사람) → 고혈압성 응급증
- 두 귀의 교정청력이 모두 40dB 이상인 사람 →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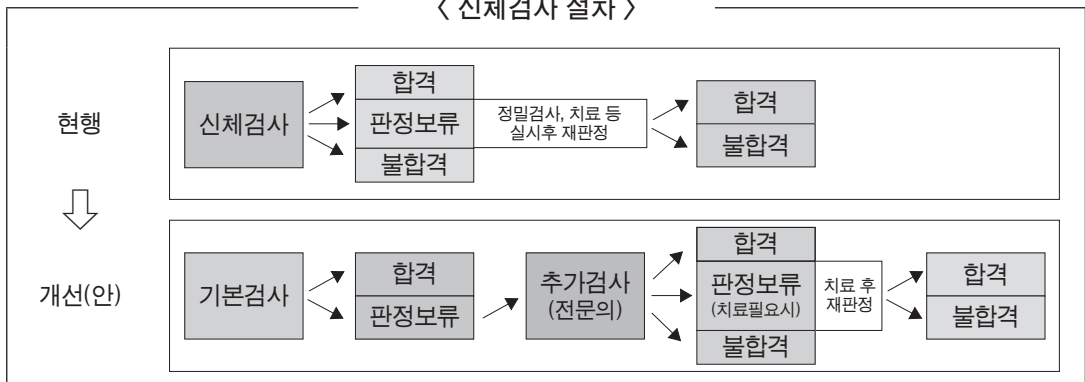
(5)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은 하나의 범주로 통합 개선한다.

〈 예 시 〉

- 심부전증·부정맥·동맥류·폐성심 등 → 중증 심혈관질환
- 혈소판 감소, 재생불량성 빈혈, 백혈병 등 → 중증 혈액질환

3.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에 합격·판정보류·불합격을 판정 하던 것을 기본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 신체검사 절차 〉



4. 이번 제정안은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5. 신체검사 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소방·교육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 뿐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준용하고 있어 긍정적인 연쇄 효과가 기대된다.

6. 황서종 처장은 “이번 개정은 보건·위생과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변화된 환경에 맞춰 1963년 제정 이래 큰 변화 없이 유지되던 신체검사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제도의 합리성과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공무원 채용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II.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14계통, 53항목 → (개정) 13계통, 22항목 - 불합격 기준으로서의 실효성이 낮은 13개 항목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식도협착, 턱관절 질환, 중증 요실금 등 - 개인별 업무수행 능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획일적인 기준 개선 - 유사 질병이 제외되지 않도록 세부병명으로 열거된 질환 통합
신체검사 실시 절차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신체검사 → (개정) 기본검사, 추가검사(전문의) - 기본검사에서는 합격·판정보류 판정 - 추가검사에서는 기본검사의 판정보류 원인이 된 분야의 전문의가 합격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기타 개선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합격 판정기준 및 절차 개선 등을 반영 의료기관 및 신체검사서 서식 개선 ○ 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을 「건강검진 기본법」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기관으로 규정 ○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문진표를 작성·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